

(붙임)



2024년 9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4년 7월 1일 부터 2024년 9월 30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

2024년 10월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이 태 선

목 차

I .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신용(금융)사업

III .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7.29	대의원 68/70	● 의결사항 - 의안 제1호 : 정관 개정(안) - 의안 제2호 :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 보고사항 - 보고 제1호 : 운영평가자문회의 회의결과 보고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7.16	17/17	● 의결사항 - 의안 제1호 :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탈퇴 확인(안) - 의안 제2호 : 고정자산 취득 사업계획 변경(안) - 의안 제3호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안) ● 보고사항 - 보고 제1호 :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보고 제2호 : 운영평가자문회의 회의결과 보고 - 보고 제3호 : 외부운용현황 보고 - 보고 제4호 : 경영개선 조치사항 이행실적 보고 - 보고 제5호 : 2024년도 하반기 조합원 해외선진지 견학 실시 계획 보고 - 보고 제6호 : 거래우수고객 농특산물 공급계획 보고 - 보고 제7호 : 2024년도 6월말 가결산 보고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의결사항
2024.08.20	17/17	● 의결사항 의안 제1호 :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탈퇴 확인(안) 의안 제2호 : 특별성과금 지급(안) ● 보고사항 보고 제1호 :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보고 제2호 : 2024년도 하반기 거래우수고객 및 조합원 지원계획 보고
2024.09.12	17/17	● 의결사항 의안 제1호 :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탈퇴 확인(안) 의안 제2호 : 202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선임(안) 의안 제3호 : 202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확인(안) ● 보고사항 보고 제1호 :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남인천농협 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88(옥련동)	830 - 9100
남인천농협 학익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35(학익동)	860 - 3200
남인천농협 용현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7(용현동)	880 - 0900
남인천농협 백운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41(용현동)	880 - 7100
남인천농협 용남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46(용현동)	880 - 0600
남인천농협 인하대역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상가A-4동 (용현동, SK스카이뷰)	890 - 0100
남인천농협 남촌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3(남촌동)	460 - 1900
남인천농협 관교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28(관교동)	450 - 1000
남인천농협 동춘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2, 1층 (동춘동, 대광빌딩)	810 - 6700
남인천농협 선학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72(선학동)	820 - 5700
남인천농협 옥련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40번길 18(옥련동)	830 - 9400
남인천농협 랜드마크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38번길 11, 102동 221호(송도동, 송도캐슬센트럴파크상가)	810 - 9200
남인천농협 신연수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88번길 16(연수동)	810 - 2700
남인천농협 문남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82, 태산아파트 상가 101호(연수동)	810 - 6900
남인천농협 송도국제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28번길 28, 203동 113호(송도동,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아파트 상가)	830 - 5000
남인천농협 송도중앙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56, 상가동 101호(송도동, 더샵하버뷰2)	899 - 0600
남인천농협 동춘창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45(동춘동)	815 - 3471

나. 인원 현황

▣ 조합원 및 준조합원 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명)

구분	전분기	당분기	증감내역	비고
조합원	1,576	1,619	43	
준조합원	143,624	146,107	2,483	

▣ 임직원 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명)

구 분		전년말	기준일	증 감	비 고
임 원	조합장	1	1	-	
	이 사	14	14		
	(상 임)	(1)	(1)	-	
	(사 외)	(-)	(-)		
직 원	감 사	2	2		
	(상 임)	(1)	(1)	-	
	정규직	232	229	△3	
	비정규직	1	3	2	
합 계		250	249	△1	

3. 정관변경 사항

현행	개정	비고
제7조(광고방법)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서면</u> 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광고방법)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u> 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18조(출자) ① (생략) ② 조합원은 <u>200좌이상</u> 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u>200좌이상</u> 을 출자 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u>100이내</u>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은 <u>200좌 이상</u> 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조합원은 <u>200좌 이상</u> 을 출자 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u>10 이내</u>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u>품목조합연합회</u>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② ~ ⑨ (생략)	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u>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u>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비고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생략) ④ 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 ~ ⑥ (생략)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개정	비고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u>선거일공고일 이후</u>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 ⑫ (생략)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u>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u>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u>선거기간 중 조합</u>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 ~ ⑤ (생략)	제67조(위원회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조합</u>의 직원중에서 종사원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u>우리조합 · 다른조합 ·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중앙회</u>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 상임이사 ·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u>상임감사위원장</u>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u>공동사업법인</u>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u>우리조합 · 다른조합 · 연합회 · 중앙회</u>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 상임이사 ·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u>감사위원장</u>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u>조합공동사업법인</u>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현행	개정	비고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결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 4. (생략) ② (생략)	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결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 10. (생략)	제7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① ~ ②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현행	개정	비고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u>조합원이어야 하는</u>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u>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u>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u>그 조합원이어야 하는</u>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현행과 같음)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 조합 <u>조합원인</u>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행과 같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u>이사의 직을 사직함</u>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u>그</u>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u>이사정수</u>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u>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정수</u>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비고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 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 4. (생략) 5.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인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2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4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단서 신설>	제114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단수 또는 복수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현행	개정	비고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u><단서 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u>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u>우리조합 및 다른조합</u>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 (생략)	제119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조합</u>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5. (현행과 같음)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u>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u>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40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u>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u>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비고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 (생 략) 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u>송부</u>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u>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u>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생 략)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u>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가. 교육지원사업은 농업인 조합원님의 원활한 영농활동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힘써 왔으며, 특히, 영농자재 구입비보조, 학자금 및 경조사비 지원, 건강검진 실시, 농업인의 날 자매농협특산물 공급 등 조합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조합원님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2024년도 3분기말 기준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영농지원사업비 346백만원, 영농지도사업비 602백만원, 생활지도사업비 203백만원, 교육사업비 260백만원, 홍보선전사업비 110백만원, 복지지원사업비 352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1,87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조합원님들의 원활한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2. 경제사업

가. 하나로마트, 산지농협 직거래 판매, 직거래장터 등 농축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조합원님에게 질 좋은 농산물과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경제사업 전체실적은 12,413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620백만원 증가

- 1) 판매사업은 184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7백만원 증가
- 2) 구매사업은 953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33백만원 감소
- 3) 마트사업은 11,265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646백만원 증가
- 4) 수수료는 11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 실적과 동일한 수준임

3. 신용(금융)사업

가. 수신사업 현황

- 1) 예수금 잔액은 3조 553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450억원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말대비 1,540억원 증가
- 2) 예수금 평잔은 2조 9,781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059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말대비 1,130억원 증가
- 3) 거치식예금 잔액은 2조 943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312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말대비 1,431억원 증가
- 4) 적립식예금 잔액은 1,363억원으로 전년말대비 △74억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말대비 67억원 증가
- 5) 요구불예금 잔액은 8,02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225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말대비 57억원 증가

나. 여신사업 현황

- 1) 대출금 잔액은 2조 5,063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36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말대비 811억원 증가
- 2) 대출금 평잔은 2조 4,64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605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말대비 780억원 증가
- 3) 평잔 기준 예대비율은 82.76%로 전년말대비 △0.95% 감소

다. 카드사업 현황

- 1) 유효회원수는 79,793명으로 전년말대비 1,808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말대비 1,040명 증가
- 2) 카드이용액은 351,554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13,611백만원 증가
- 3) 카드손익은 1,744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265백만원 증가

라. 방카슈랑스사업 현황

- 1) 총보험료는 14,436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1,587백만원 증가
- 2) 수수료수익은 850백만원으로 전년동월말대비 178백만원 증가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4년 9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전년도말 (E)	전년도말 대비	
						증 감	성장률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17,829	12,413	69.6%	11,793	620	5.3%	16,132	△3,719	△23.1%
판 매		268	184	68.7%	177	7	4.0%	216	△32	△14.8%
구 매		1,150	953	82.9%	986	△33	△3.3%	1,072	△119	△11.1%
마 트		16,400	11,265	68.7%	10,619	646	6.1%	14,829	△3,564	△24.0%
가 공										
기 타		11	11	100.0%	11			15	△4	△26.7%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3,000,000	3,055,267	101.8%	2,901,277	153,990	5.3%	2,910,297	144,970	5.0%
	평잔	2,954,900	2,978,092	100.8%	2,865,114	112,978	3.9%	2,872,206	105,886	3.7%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2,520,000	2,506,285	99.5%	2,425,147	81,138	3.3%	2,472,709	33,576	1.4%
	평잔	2,484,250	2,464,694	99.2%	2,386,640	78,054	3.3%	2,404,214	60,480	2.5%
보험료		15,000	14,436	96.2%	12,849	1,587	12.4%	18,563	△4,127	△22.2%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64,018	I .유동부채	62,688
현금	11,276	외상매입금	48
외상매출금	297	단기차입금	
재고,생물자산	892	기타유동부채	62,640
기타유동자산	51,553	II .금융업예수금	3,055,267
II .금융업예치금	712,232	III .금융업차입금	1,563
III .금융업대출채권*	2,437,325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V .비유동부채	1,574
V .비유동자산	94,754	장기차입금	
투자자산	46,524	기타비유동부채	1,574
유형자산	46,625	부채 합계	3,121,092
무형자산		I .출자금	65,394
기타비유동자산	1,605	II .자본잉여금	3,965
		III .자본조정	△514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768
		V .이익잉여금	106,624
		자본 합계	187,237
자산 총계	3,308,329	부채와 자본 총계	3,308,329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9월말 (A)	'24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52,706	144,923	△7,783
영업비용	94,549	90,606	△3,943
매출총이익	58,157	54,317	△3,840
신용사업	56,987	53,165	△3,822
경제사업	1,170	1,152	△18
판매비와관리비	35,334	35,449	115
영업손익	22,823	18,868	△3,955
교육지원사업순비	2,027	1,865	△162
영업외손익	754	1,139	385
법인세차감전손익	21,550	18,142	△3,408
법인세비용	△1	4	3
당기순손익	21,551	18,138	△3,413